

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

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국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월 20일, 경상북도교육감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년 2월 1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최규태

나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1) 취득재산 : 5,025,673천원

▪ 건 물(1건) : 1,175㎡, 5,025,673천원

【2023년도 제1회 수시분 취득재산 목록】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	추정가액 (천원)	취득 사유
	기관명	구분	소재지	면적(㎡)		
계		건물	1건	1,175	5,025,673	
1	형남초등학교	건물	구미시 형곡동 798	1,175	5,025,673	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

※ 추정가액 산정기준 : 건물 - 사업비

2) 취득 변경 재산 : 3,840,494천원

▪ 건 물(1건) : 960㎡, 3,840,494천원

【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 변경 재산 목록】

일련 번호	재 산 명	변경내역				변경 계획 수립 사유
		구분		2023년 제1회 수시분 변경계획(A)	2022년 제2회 수시분 당초계획(B)	증 감 (A-B)
1	문경교육 지원청 교직원 연립관사 신축	소재지		문경시 문경읍 상리 486-1, 487-1	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769-9	
		면적	건물	960㎡	960㎡	-
		취득 금액 (천원)	건물	3,840,494	3,873,842	△33,348
						위치 등 변경

4. 근거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
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38조제1항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
- 「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0조의2

5. 세부 현황

□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 및 「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(토지는 개별공시지가, 건물과 그 밖의 재산은 시가표준액) 및 토지면적이
 - 취득의 경우 20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6,000㎡ 이상
 -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5,000㎡ 이상
 -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임.

□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 내역은

- 취득 재산은 1개 기관에
 - 건 물(1건) : 1,175㎡, 5,025,673천원임
- 취득 변경 재산은
 - 교직원 연립관사 신축 위치 변경 건으로, 당초 위치인 문경시

마성면 외어리 769-9(건물면적 960㎡)에서 문경시 문경읍 상리 486-1, 487-1(건물면적 960㎡)로 소재지를 변경하고, 취득금액 38억 7,384만 2천원에서 38억 4,049만 4천원으로 변경 취득하는 것임.

□ 취득할 재산의 내용을 살펴보면

-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물 취득 건으로, 형남초등학교는 체육 수업 및 졸업식 등 각종 행사 시 적당한 실내공간이 없어 날씨의 제약을 많이 받아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, 급식소 노후화로 급식운영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이며, 지역주민 및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·생활체육시설로써 다목적 강당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비를 반영한 것임.

□ 취득 변경 재산의 내용을 살펴보면,

- 기 승인된 문경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관사 신축 부지가
 - 삼각형 모양의 지대가 낮은 입야로 효율적인 재산의 보호·관리가 어렵고, 지목 변경 및 기초 보강 공사 등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
 - 인근 우사·돈사 등 축산 농가들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대체 부지로 이전 및 교환 취득하고자 위치와 취득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6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중찬)

□ 취득 재산 검토 의견

○ 형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건

- 형남초등학교(11학급, 221명)는 다목적강당이 없어 체육수업 및 졸업식과 입학식, 발표회 등 각종 행사 시 날씨의 제약을 받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며, 현재 급식소는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이 있는 별관동 1층에 있어, 교육공간과 급식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냄새와 소음 등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, 급식소로 출입할 수 있는 차도는 하나뿐이며 도로폭이 좁아 급식물품 운반 차량 출입 시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,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.
-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주민들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,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.

□ 취득 변경 재산 검토 의견

○ 문경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관사 신축 위치 변경 건

-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·확정된 문경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관사 신축 부지는 인근 축산 농가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여 관사 거주 시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- 변경 부지인 문경초등학교 실습지는 주위에 문화체육센터, 시립도서관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고, 교통이 편리하며, 인근에 학교가 많아 관사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
- 교직원 연립관사 위치 변경은 주거 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,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위치, 주변 환경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7. 질의 및 응답 요지: 생략

8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9. 수정안의 요지: 「없음」

10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11. 소수의견의 요지: 「없음」

12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